

『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2021. 1. 1. 부터 종량제봉투 가격이 인상됨에 따라 기존 종량제봉투의 종류 및 규격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여 쓰레기 배출 및 수거에 새로운 변화를 도모하고 종량제봉투의 디자인을 유연하게 개선할 수 있도록 종량제봉투의 제작사양을 규정하는 내용을 삭제하고자 함.
- 환경관리원들의 근골격계 및 척추관련 질환 예방을 위하여 종량제봉투 100리터를 제작중단하고 75리터를 사용하게 됨에 따라 봉투 규격 개정

3. 주요내용

- 종량제봉투의 종류 및 재질 변경(안 제14조제2항, 제3항)
(현행) 종류에 따라 다른 색깔 → (개정) 반투명으로 통일
- 종량제봉투의 제작사양 삭제 (안 제15조 및 별표3 삭제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폐기물관리법」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합 의 : 기획예산과, 감사담당관과 합의되었음.

5. 검토의견

- 본 「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은,
 - 2021. 1. 1.부터 종량제봉투 가격이 인상됨에 따라 기존 종량제 봉투의 종류 및 규격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여 쓰레기 배출 및 수거에 새로운 변화를 도모하고자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
 - 100리터 종량제봉투의 제작을 중단하고 75리터를 사용하도록 봉투 규격을 개정하고, 종량제봉투의 디자인을 유연하게 개선할 수 있도록 종량제봉투의 제작사양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.